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6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새 정부 정책기조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개편·강화하여 군민의 행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과 명칭변경(1)

○ 건설방재과 → 안전건설과로 명칭변경

나. 안전관리 업무 강화

○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3. 6. 19 ~ 6. 23) : 별도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제4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28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7.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제4조제13항제34호(종전의 32호) 중 “건설방재관리”를 “안전건설관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성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건설안전담당”을 “안전건설담당”으로 한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건설방재과 건설안전담당”을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으로 한다.

④「성주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단의 설치)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청소년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산업단지개발추진단(한시기구)을 둔다.	제3조(실・과・단의설치)---------- ---------- ---------- ---------- ---------- --------안전건설과, 산업단지개발추진단(한시기구)을 둔다.
제4조(분장사무) ① ~ ⑫ (생략) ⑬ 건설방재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5. (생략) <신 설> <신 설> 26. (생략) 27. (생략) 28. (생략) 29. (생략) 30. (생략) 31. (생략) 32. 그 밖의 건설방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장사무)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안전건설과 ---------- ------. 1.~25. (현행과 같음) 26.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7.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28. (현행 제26호와 같음) 29. (현행 제27호와 같음) 30. (현행 제28호와 같음) 31. (현행 제29호와 같음) 32. (현행 제30호와 같음) 33. (현행 제31호와 같음) 34. ------ 안전건설관리 ---------- ------